조기재취업수당 안내-(취업)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조건

1. 수급 신청일 기준 14일이 지난 후(건설일용근로자 포함)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2. 2024년 고시임금액(월 574만원)미만 소득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3.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경우
4.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 단절이 없는 경우
   사례) '24. 6. 30. 퇴사 → '24. 7. 1. 입사(O), '24. 6. 30. 퇴사 → '24. 7. 6. 입사(X)

4-1.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월 10일 이상 12개월간 연속 근무한 경우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재취업일과 재취업일 기준 2년 이내)
6. 실업의 신고일(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되었던 경우가 아닐 것
7.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동일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가 아닐 것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X)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X)
8.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닐 것
9. 기타사항
   -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외이사·비상임(근) 이사·감사 등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취업에 비해당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비해당(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 제외)

2. 제출서류〔서울강서고용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재직증명서 [사업장 발급/12개월(만 65세이상자는 6개월)이상 근로 사실 확인되어야 함]
③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12개월분(만65세이상 대상자는 6개월)]

3. 청구방법

방문(대리인 가능), 등기우편, 인터넷(www.work24.go.kr - 첨부자료 스캔하여 업로드), 팩스접수 가능
[문의 ☎ : 02-2063-6761(문자가능), 팩스 : 0508-8230-1094]

4.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급여일수(재취업일~수급기간만료일) × 1/2

5. 유의사항

① 근무 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임의가입대상자 제외)
② 재취업 후 12개월(만 65세이상자는 6개월) 사이에 근로 단절이 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③ 청구 시점 :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④ 이직일 기준 65세이상 선지급: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업일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
⑤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인정 창구에 <재실업신고> 해야 함
⑥ 처리기한 : 서류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4일 (실제 약 3주 소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23. 12. 29.>

고용보험(www.ei.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수급자격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취직 사업장 (사업에 고용된 경우)	④ 사업장명	⑤ 대표자 성명			
	⑥ 소재지 (전화번호:)				
	⑦ 취직일	⑧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⑨ 월평균 임금액	원
	⑩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⑪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	[ ] 영업을 양도·양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 ]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 ] 합병·분할된 사업장에 재취직 [ ] 해당 없음		
자영업 사업장 (자영업을 하는 경우)	⑫ 사업장명	⑬ 대표자 성명			
	⑭ 소재지 (전화번호:)				
	⑮ 사업 시작일	⑯ 사업자등록번호			
	⑰ 업종				
지급계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사항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 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